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썬엑셀 1층 필리노베이터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 보고 ② 영업 보고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2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 1주당 42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1 참조)
제2-1호 : 상법 개정 반영
제2-2호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공훈의 선임의 건 (첨부2 참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공훈의 선임의 건 (첨부3 참조)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첨부4 참조)
제5-1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
제5-2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태희 선임
제6호 의안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 (첨부5)

4.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http://ex-em.com>)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금번 주주총회에는 한국에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에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아이알큐더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행사방법 :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첨부6 참조), 신분증
-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첨부7 참조), 인감증명서(개인/법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참고사항

-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ex-em.com/ko/resource/ir/disclosure>)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2)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서식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일인 2026년 03월 16일(월) 중 당사 홈페이지(<https://ex-em.com/ko/resource/ir/disclosure>)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기타 첨부서류

첨부 1. 정관변경(안) 2. 이사 선임 세부 내역 3. 감사위원 선임 세부 내역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 내역
5. 임원보수지급규정(안) 6. 주주총회 참석장 7.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주주총회 참석 당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주식회사엑셀

대표이사 조종암, 고평석 (직인생략)

첨부1. 정관 변경(안)

- 상법 개정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과 예외적 보유 또는 처분 사유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p>
<p>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 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p>	<p>-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 호 변경</p>
<p>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 -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 상관없이 합산 3%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법 제542조의12 개정내용을 반영</p>
<p>제47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한 상법 제542조의12 개정내용을 반영</p>
<p>(신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 제4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을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 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p>

첨부1. 정관 변경(안) (계속)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u>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u>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u>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임원보수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신설)	<u>부칙</u> 제4조(이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 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첨부2. 이사 선임 세부 내역 (사외이사 1인)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공훈의	2년	('21.11-현재) 고도화사회이니셔티브 대표이사 ('18.10-'22.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09.04-'19.09) (주)소셜뉴스위트리 대표이사/발행인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0.03.13	재선임							

첨부3. 감사위원 선임 세부 내역 (감사위원 1인)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공훈의	2년	('21.11-현재) 고도화사회이니셔티브 대표이사 ('18.10-'22.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09.04-'19.09) (주)소셜뉴스위트리 대표이사/발행인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0.03.13	재선임							

첨부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 내역 (분리선출 2인)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이상훈	2년	('06.03-현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4.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위원 ('24.09-현재)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23.12-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21.04-현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05-현재) 충남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21.07-'25.07)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22.09-'25.06)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5.11.21	재선임	('23.11-'24.11)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혁신전문위원회 위원 ('21.04-'24.04)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3.01-'23.0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21.08-'23.01)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01-'21.12) 한국경찰학회 회장 ('15.05-'21.05)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경비·정보분과 위원장 ('16.03-'17.08) 대전대 신문방송사 주간 ('14.03-'16.02) 대전대 홍보기획실 실장						
양태희	2년	('21.11-현재)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M&A 실사, 회계감사, 자금조달 등) ('21.05-'22.10) 주식회사 이도 CFO (회계, 세무, 자금, 투자 등)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77.03.05	신규선임	('12.01-'21.04) 대보그룹 재경팀장 (회계, 세무, 자금 등)						

첨부5. 임원보수지급규정(안)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제1항에 의해 주식회사 엑셈(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상법상 등기된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급(연봉), 상여금 및 기타 보상을 총칭한다.
2. “기본급(연봉)”이란 직위 및 역할에 따라 매월 정기 지급되는 고정 보수를 말한다.
3. “상여금”이란 경영 성과에 연동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 보수를 말한다.

제 4조(보수 구성 체계)

1. 등기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구성 항목의 적용 여부는 직위별로 달리 정한다.

구분	기본급(연봉)	상여금	기타보상
대표이사	○	○	○
사내이사	○	○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X	△

○ : 해당, X : 미해당, △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택적 적용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는 기본급(연봉) 중심으로 구성하며, 경영 독립성 보호를 위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5조 (기본급)

1. 기본급(연봉)은 임원의 직위, 역할, 경력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매월 1회 정기 지급한다.
2. 기본급(연봉)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매년 결의한다.
3. 임기 중 기본급(연봉) 조정은 전조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 6조 (상여금)

1. 상여금은 연간 경영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 지급률은 개별 임원의 월급여의 0%~200% 범위에서 결정하며,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은 이사회에서 매년 결의한다.

제 7조 (퇴직금)

1. 등기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기타 보상)

1. 임원에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업무용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지원
 - ② 건강검진비 및 단체상해보험료
 - ③ 임원배상책임보험
 - ④ 직무 관련 교육, 훈련비
 - ⑤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위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한도는 별도 내부 기준에 따른다.

제 9조 (보수총액한도 승인)

1. 임원의 연간 보수총액한도는 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며, 한도 내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금액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 10조 (규정의 적용)

1.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하므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주총회 참석장

주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유주식수 : 주
실명번호 :
회의명칭 : (주)엑셈 제1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주)엑셈 1층 필리노베이터홀
일 시 : 2026년 3월 26일 오전 11시 00분

상기 본인은 2026년 3월 26일 (주)엑셈의 정기주주총회 및 그 연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음.

2026년 3월 26일

※ 실명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요망

